

카자흐스탄(Kazakhstan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91년
- 현행법 : 1997년(사회보장연금); 2003년(사회보험), 2005년 시행; 2013년(연금); 2015년(노동법)

2 제도형태

- 기초제도, 사회보험, 의무개인계좌 및 사회부조제도

3 적용대상

- 기초제도 : 카자흐스탄 시민권자
- 사회보험(노령) : 1998년 1월 1일 이전 최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있는 카자흐스탄의 근로하는 시민
- 사회보험(장애 및 유족) : 영구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는 해외국민, 시민권이 없는 자를 포함한 근로자 및 자영자
- 의무개인계좌 : 영구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는 해외국민, 시민권이 없는 자를 포함한 근로자 및 자영자
- 사회부조 : 공평한 카자흐스탄 거주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기초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 : 없음
 - 의무개인계좌 : 월 가입소득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75배임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 tenge임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기초제도 : 없음
 - 사회보험 : 없음(노령); 월 가입소득의 3.5%(장애 및 유족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
- 1 -

- 장교급여
 - 장교연금(사회보험) : 장애 그룹 I(어떠한 근로도 불능함), 그룹II(보통의 근로 불능함) 또는 그룹III(근로 가능)으로 판단되어야 함
 - 장애사회연금(기초국민연금, 사회부조, 필요성조사) : 장애 그룹 I(어떠한 근로도 불능함), 그룹II(일반 근로 불능함), 그룹III(근로 가능)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장애연금 수령 자격이 없어야 함(사회보험 또는 의무개인계좌)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장애 그룹 I(어떠한 근로도 불능함), 그룹II(보통의 근로 불능함) 또는 그룹III(근로 가능)으로 판단되어야 함
- 장애사회연금(기초국민연금, 사회부조, 필요성조사) : 장애 그룹 I(어떠한 근로도 불능함), 그룹II(일반 근로 불능함), 그룹III(근로 가능)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장애연금 수령 자격이 없어야 함(사회보험 또는 의무개인계좌)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사망 시 노령 혹은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거나 지급 받을 자격이 있었음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은 퇴직연령에 도달한 미망인(홀아비), 장애자,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자; 18세 미만의 자녀(전일제 학생일 경우 23세; 18세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; 3살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친척; 근로를 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포함함
- 유족급여(의무개인계좌) : 가입자 사망 시 지명 유족에게 지급
- 유족사회연금(기초국민연금, 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 : 가족 부양자가 노령 혹은 장애연금(사회보험 혹은 의무개인계좌)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, 대상자의 사망 시 지급됨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은 퇴직연령에 도달한 미망인(홀아비), 장애자, 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자; 18세 미만의 자녀(전일제 학생일 경우 23세; 18세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; 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친척; 근로를 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포함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(기초국민연금, 기초제도)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54%에 10년을 초과한 보험이 적용된 고용기간의 각 연도마다 2% 가산한 금액 지급(2019년 1월)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tenge임(2019년 1월에는 29,698tenge임)
 - 급여조정 : 법정 월 최저임금은 국가예산에서 매년 결정됨
 - 노령연대연금(사회보험) : 가입자의 1995년 이후 수입이 가장 높았던 3년 연속 기간에 대한 월 평균수입의 60% + 25년(남성) 혹은 20년(여성)을 초과한 보험적용 고용기간의 각 연도마다 월 평균수입의 1%
 - 월 최저 노령연대연금액은 33,745tenge임(2019년 1월에는 36,108tenge임)
 - 월 최고 노령연대연금액은 가입자의 1995년 이후 수입이 가장 높았던 3년 연속 기간에 대한 월 평균수입의 75%임
 - 부분연금 : 연금은 각 완전연급에 요구되는 연도 수보다 적은 보험납부연도 수에 비해

- 3 -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배임
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 tenge임
- 자영자의 보험료는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- 의무개인계좌 : 월 가입소득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75배임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 tenge임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기초제도 : 없음
- 사회보험 : 없음(노령); 월 가입임금의 3.5%(장애 및 유족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10배임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 tenge임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실업, 출산, 보육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- 의무개인계좌 : 없음; 위험직종 근로자들은 월 가입임금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임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75배임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 tenge임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기초제도 : 총비용
- 사회보험 : 필요시 보조금 지급(노령); 없음(장애 및 유족); 사용자로 부담하는 금액은 있음
- 의무개인계좌 : 없음
- 사회부조 : 총비용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기초국민연금, 기초) : 63세 남성 혹은 58세 6개월 여성인 자
- 노령연대연금(사회보험) : 최소 25년의 납부기간을 가진 63세 남성 혹은 최소 20년의 납부기간을 가진 58세 6개월 여성; 최소 25년의 납부기간을 가진 50세 남성 혹은 최소 20년의 납부기간을 가진 45세 여성이며 특정 훼손된 환경에서 1949~1963년 사이에 최소 5년간 거주한 자; 최소 5명의 자녀를 8세까지 양육한 53세 모친에게 지급
 - 부분연금 : 가입자의 완전연금 요구 조건 미 충족 시 감액연금 지급
- 노령수당(의무개인계좌) : 최소 월 노령연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재정하기에 부족한 계좌

- 2 -

- 하여 줄어듦
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 : 연금은 퇴직 시 가입자의 계좌 잔고에 근거하며, 월, 분기, 연도 주기로 지급될 수 있음
 - 가입자의 계좌 잔고 값이 월 최소연금액의 30배보다 적으면 일시금이 지급됨
 - 월 최소연금액은 33,745tenge임(2019년 1월에는 36,108tenge임)
- 노령수당(의무개인계좌) : 계좌잔고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노령사회연금(기초국민연금, 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52%가 지급됨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tenge임(2019년 1월에는 29,698tenge임)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가입자의 <장애 발생 전 24개월간 월평균 가입소득과 법정 월 최저임금의 80%의 차이> × 소득대체율 × 작업능력상실 정도 × 보험적용기간비율>에 해당하는 월 급여 지급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tenge임(2019년 1월 29,698tenge임)
 - 소득 대체율은 0.6임
 - 판단된 근로 능력 상실이 80~100%(장애자 그룹 I)이라면 작업능력상실 정도는 0.7임; 60% 이상 80% 미만(장애자 그룹 II)이라면 작업능력상실 정도는 0.5임; 30% 이상 60% 미만(장애자 그룹 III)이라면 작업능력상실 정도는 0.3임
 - 6개월 미만 납부기간의 보험적용기간비율은 0.1;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0.7;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0.75;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0.85;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0.9;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0.95; 60개월은 이상 1.0임
 - 장애연금은 일반퇴직연령 도달 시 중지되며 노령연대연금으로 대체됨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.
- 장애사회연금(기초사회급여, 사회부조, 필요성조사) : 측정된 장애의 정도와 수혜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월 기본정액급여가 지급됨
 - 그룹 I 장애자에게 법정 월 최저임금의 192%, 그룹 II 장애자(16~18세에게는 159%)에게 153%, 그룹 III 장애자(16~18세에게는 120%)에게 104% 지급함; 어떠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16세 이하의 자녀에게 140% 지급함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tenge임(2019년 1월 29,698tenge임)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<(사망 전 24개월간 월평균 가입소득과 법정 월 최저임금의 80%의 차이) × 소득대체율 × 생존자수 비율 × 보험적용기간비율>에 해당하는 월 급여 지급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8,284tenge임(2019년 1월에는 29,268tenge임)
 - 소득대체율은 0.6임
 - 생존자수 비율은 1명의 피부양자의 경우 0.4; 2명인 경우 0.5; 3명인 경우 0.6; 4명 이상인 경우 0.8임
 - 6개월 미만 납부기간의 보험적용기간비율은 0.1;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0.7; 12개월

- 4 -

이상 36개월 미만은 0.75;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은 0.85;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은 0.9;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은 0.95; 60개월 이상은 1.0임

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- 유족급여(의무개인계좌) : 사망자의 계좌 잔고가 지명된 생존자에게 사망자가 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됨
- 유족사회연금(기초사회급여, 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 : 가족 크기와 가족 구성원의 장애 유무에 근거하여 월 기본정액급여가 지급됨

7 관리운영기관

- 보건 및 사회개발부(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)
 - 기초제도, 사회보험,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 조직 및 관리
 - <http://www.enbek.gov.kz>
- 사회보험 주 기금(State Fund of Social Insurance)
 - 사회보험제도를 위한 보험료 징수
- 지역부(Regional department)
 - 기초제도, 사회보험, 사회보장제도 관리
- 카자흐스탄 국립은행(National Bank of Kazakhstan)
 - 의무개인계좌제도 연금기금자산 관리
- 통합누적연금기금(Unified Accumulative Pension Fund)
 - 의무개인계좌제도 관리
 - <http://www.enpf.kz>

<2018년 ISSA 자료>